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7. 03. 01 개정 2013. 03. 01
개정 2013. 03. 31 개정 2018. 10.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산학취업처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1.> <개정 2014. 3. 31., 개정 2018. 10. 29.>

②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교무위원중에서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1>

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원격지에 위치한 캠퍼스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표창대상자의 추천
2. 표창대상자의 선정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4조 (표창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1. 본교소속 교직원
2. 내·외국인 및 단체로서 본교 발전에 공이 있는 자

제5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시행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6조 (심의 절차) ① 공적의 심의는 공적조서에 의한 자료나 기타 실증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공적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창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개최, 회의록작성, 회의개최 결과보고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주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3.1>

제8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 날부터 시행한다.